

2023년 제10회 건축소위원회(건축구조) 심의 주요결과

[3호 안건: 중구 윤남동 1709-1번지(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)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		심의일자	2023. 11. 22.	
건축종별	[○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] 기타	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주식회사 인천영종피에프브이 외 5인	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				
	지 번	1709-1	관련지번		
	대지면적	72,300.50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3종일반주거지역/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	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120.1180㎡	건폐율	%	층 수 지하 : 총 지상 : 1층
	주 용 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(경비실, 문주)	구 조	철근콘크리트구조, 철골조	건축물 동수 동
	최고높이	7.10m	용적률	%	연면적 합계 35.0㎡

심의내용	구 분	주요 심의결과
	(구조)분야	○ 건축감리 구조협력 업무에 차질없도록 착공 전까지 업무수행자를 선정하여 제출할 것. (원설계 의도가 시공시 반영될 수 있도록 책임기술자와 협력 권장)
	(토질)분야	○ 조치계획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수행하기 바람.

심의결과	☒ 원안 의결 ☐ 조건부 의결 ☐ 재검토 의결 ☐ 부결 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 - 원안 의결 : 상정안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 - 조건부 의결 : 상정안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- 재검토 의결 : 상정안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- 부결 : 상정안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)

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구조안전심의로서, 사전검토의견 및 심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는 인. 허가권자가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